

범칙자 적발보고서					결재
제 호 수신자: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제 목: 「수산생물질병 관리법」 위반행위 적발보고					
「수산생물질병 관리법」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수산생물전염병에 오염된 시설 또는 물건에 대한 소독·소각 또는 매몰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범칙자를 아래와 같이 적발하여 보고합니다.					
범칙자	성명		생년월일		
	주소 전화번호()				
범칙행위	일시/장소				
	위반내용				
특별사법경찰관리 성명 (서명 또는 인)					